

서대구역 센텀 | 화성파크드림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안내문

■ 신청자격(「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세대수의 3% 범위) : 28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하였을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
-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함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 ※ 기타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69호 (2018.5.8.)]에 따름

■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

구분	59A	59B	74	84A	84B	84C	99	계
노부모부양	-	2	4	6	5	7	4	28
계	-	2	4	6	5	7	4	28

※ 본 안내문은 고객의 편의를 위해 별도로 제공된 자료이며, 인쇄편집상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대구역 센텀 | 화성파크드림

노부모부양 가점 산정기준표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이상 ~ 9년미만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인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이상 ~ 10년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이상 ~ 11년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이상 ~ 12년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이상 ~ 13년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이상 ~ 14년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이상 ~ 15년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표 등 ·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만 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①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②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출입국사실증명서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이상 ~ 9년미만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통장(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미만	2	9년이상 ~ 10년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이상 ~ 11년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이상 ~ 12년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이상 ~ 13년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이상 ~ 14년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이상 ~ 15년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노부모특별공급 제외)

※ 본 안내문은 고객의 편의를 위해 별도로 제공된 자료이며, 인쇄편집상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